

	<h2 style="margin: 0;">교원연구년제 규정</h2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9. 3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 재직 중인 전임교원들의 연구성과를 높이고,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교원연구년 신청자격은 신청 당시 대학에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연구년 종료 후 정년퇴임 시까지 잔여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6년 미만 재직한 교원이 6개월 이상 국외에 파견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연수를 8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교무위원은 보임기간 중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되, 교무위원을 면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잔여근무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휴직 중인 교원은 제①항의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

④ 징계의결 중인 자,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기간 및 제한) ① 연구년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.

② 연구년은 대학 재직 중 2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, 2회째 연구년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 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근무연수 산정) ① 최초 연구년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부임한 때부터 기산한다.

② 두번째 연구년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직전 연구년 종료 후 복귀한 때부터 기산한다.

③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대상은 연수 또는 파견이 종료되어 복귀한 때부터 기산한다. 다만, 교무위원의 보임기간은 계속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기산한다.

제5조(신분보장 및 급여) ① 연구년 기간 중 대학의 교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.

②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본봉(기본급)으로 한다.

③ 연구년 기간은 승진·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 근무연수에서는 감하지 아니하나 연구년 기간 중의 승진·승급은 유보된다.

④ 연구년 기간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연구년 잔여 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. 다만, 그 잔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복무 및 의무) ① 연구년 교원은 허가된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대학에 복귀하여야 하며,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학에 근무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10일 이내에 연구년 복귀신고서<별지 제6호>를 제출하며, 1개월 이내에 소속 학과장과 교무입학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연구결과개요보고서 <별지 제7호>를 제출하고, 1년 이내에 최초 연구계획서와

일치하는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연구결과보고서<별지 제8호>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교원성과평가제 심사규정에 의한다.

③국내에서 연구년을 수행하는 교원이 대학에서 강의하고자 할 때에는 주당 1강좌 3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으며, 타 대학(교) 및 기관의 전임직이나 외래강사직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.

④연구년을 수행하는 교원이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처리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복귀로 처리한다.

⑤연구년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귀하지 않거나 상기 복무 및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받은 급여의 전액 또는 의무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, 차기 연구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선정절차 및 제출서류) ①연구년 희망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소속 학과장과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구년 신청서 1부<별지 제1호>
2. 연구계획서 1부<별지 제2호>
3. 국내·외 연구수행기관 발급 초청장 1부
4. 서약서 1부<별지 제3호>
5. 학과 교수회의록 1부

②연구년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③연구년 교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연구년 부여 회수
2. 최근 3년간 교수업적실적
3. 최초임용일자

④대학(교), 관할청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된 기관의 지원으로 국내·외 파견이 예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년 교원수 제한) ①연구년 교원수는 휴직 및 국내·외 파견교원을 포함하여 대학 전임교원 현원의 30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.

②연구년 교원수는 원칙적으로 학과별 1인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휴직 및 국내 외 파견 등으로 학과 또는 전공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연구년 교수선정을 유보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계획의 변경 및 철회) ①연구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년 시행일 혹은 종료일 2개월 이전에 변경신청서<별지 제5호>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선정된 연구년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년 시행일 2개월 전에 철회신청서<별지 제5호>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2호>

연구 계획서

학 부		학 과	
직 급		성 명	
연구과제명			
연구 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개월)		
연구 목적			
연구 계획 (요 약)			
활용 방안			

년 월 일

신청인 :

인

서 약 서

소 속 :

직 급 :

성 명 :

위 본인은 학년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됨에 있어 연구년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나는 연구년 수행기간 중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교내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복귀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겠습니다.
2. 나는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.
3. 나는 복귀 후 연구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.
4. 나는 연구년 수행기간 중 체재국의 법률위반, 국내·외 연구기관의 규칙위반, 교원신분이탈 등으로 연구년 수행을 중도에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 복귀할 것이며,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(복무 및 의무) 제5항에 의거 조치되어도 아무런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 약 자

(인)
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

<별지 제4호>

강의변경 계획서

학년도	학기	교 과 목	주당 시수	변 경 내 역			비고
				소 속	직 급	성 명	
	() 학기						
	() 학기						
계		() 개					

년 월 일

신 청 인 :

인

<별지 제8호>

연구년 연구결과 보고서

학 과		직 급		성 명	①
연구과제명					
연구년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개월)				
연구실적물	학술지명 (출판지)				
	결과구분	학술지거제(), 학술발표(), 학술저서(), 대학교재(), 작품전시(), 기타()			
	발간년월일		호 · 면 (페이지수)		
연구결과 요 약					
첨부	연구실적물 1부				
위와 같이 연구년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제 출 인 : ①					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					